

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

■ '입사지원서'는 별도 블라인드 처리 필요 없음

※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개인신상정보는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

■ '자기소개서, 직무능력소개서(경력·경험기술서)'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

○ (블라인드 위배 기준) 아래 항목을 직·간접적으로 자기소개서, 직무능력소개서(경력·경험기술서)에 기재할 경우 블라인드 위배

· 블라인드 처리 항목 : 성명, 성별, 출신지역, 나이, 출신학교명, 가족관계, 혼인여부, 신체조건(키·체중), 종교 등

· 블라인드 기준 및 위반 예시

구분	기준 및 위반 예시
성명	- 이번 채용에 지원하게 된 김보훈~
성별	- 군복무를 '현역(운전병, 군수병, 전경, 의경 등)'으로 입대하게 되어~,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여~ ※ 의무 군복무는 남성만 가능하므로 성별 직접 유추 가능 ※ 군복무 시절 등 장교부사관에도 해당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(장교부사관은 성별 구분없이 복무 가능) - 여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~ - 집안의 든든한 만형으로서~,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(어머니)가 되고자~
출신지역	- 평생을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~, 서울토박이인 저는~
나이	- 올해 스무살이 되어~,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태어나~
출신학교	- 보훈대학교 최우수 졸업생으로서~
가족관계	- 보훈공단에서 정년퇴직하신 아버지께서~, 현직 국회의원이신 저희 어머니와 함께~
혼인여부	- 2년 전 결혼 후에, 아내(남편)과 함께~
신체조건	- 저는 어릴 때부터 체중 관리로 50kg를 유지 중이며, 제 키는 180cm이 넘어~
종교	- 불교 동아리 회장으로서~, 매일 교회에 나가는~

※ 경력과 관련된 기관명(우리 공단 포함), 직무 관련 과목 및 성적, 보유 자격증 등은 기재 가능

[붙임2]

개인 및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수원보훈요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시하며, 지원자께서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,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 지원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인 및 민감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	· 근로계약 체결(채용) 절차의 진행 및 관리, 경력 · 자격 등 확인, 채용 여부의 결정 · 민원처리, 분쟁해결, 법령상 의무이행
수집 · 이용할 항목	· 개인정보 수집항목 : 성명, 전자우편, 현주소, 연락처(본인), 비상연락망(자택, 가족 등), 교육사항, 자격 및 면허사항, 경력사항* * 경력자의 직종 · 직무 조회 및 검증을 위해 필요시 전 직장 직접 연락 및 조회 가능 · 민감정보 수집항목 : 보훈사항(보훈대상), 장애사항(장애인대상) ※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.
보유 · 이용기간	· 위 정보는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 · 이용됩니다. · 위 기간 경과 또는 지원자가 채용에 탈락하거나 근로계약체결을 거절한 경우에는 민원처리, 분쟁 해결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· 이용됩니다.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· 위 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 · 위 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채용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·이용에
동의함(), 동의하지 않음()

* 해당사항에 √ 표기

2026년 유 유

성명 : (인)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장 귀하

[붙임3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장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